

심리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한 인식조사: 상담심리사와 일반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 난 미	하 재 필 [†]	성 현 모	이 상 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박사과정	고려대학교 두뇌동기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고려대학교 교수

2022년 4개의 심리·상담 관련 법안들이 발의됨에 따라, 상담 실무자의 자격 수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담 실무자로 업(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 응시기준(최소학력과 수련 기간)에 대해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상담심리사와 일반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총 882명의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상담심리사와 총 779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최소학력에 관한 질문에서는 일반인은 ‘학사졸업’, ‘석사졸업’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상담심리사는 ‘석사졸업’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필수 수련 기간에 관한 질문에서는 상담심리사와 일반인 모두 ‘1,000시간(대략 1년 동안 주 4일간 수련)’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위과정 중 실무실습 기간에 관한 질문에서는 상담심리사는 ‘200시간’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리·상담 관련 법제화 논의에서 자격 응시기준(최소학력과 수련 기간)에 관한 시사점과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제어 : 응시 자격, 최소학력, 수련 기간, 상담심리사, 일반인, 인식조사

† 교신저자 : 하재필,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Tel: 055-772-1260, E-mail: hayesha0712@gnu.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심리상담사 법안(최종윤 외 9인, 2022.03.28.),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외 9인, 2022.03.31.), 심리사 법안(서정숙 외 10인, 2022.04.29.), 상담사 법안(심상정 외 9인, 2022.07.14.) 등 4개의 심리상담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각 법안은 공통적으로 용어 정의와 업무, 자격과 시험, 등록, 권리와 의미, 협회(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지도 감독 및 벌칙,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법안은 2023년 8월 현재 병합되어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것은 사회변화에 따라 심리상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안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를 발주하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2년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구를 수행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심리상담 관련 전문학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의 여러 요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22.06.09.; 한국상담학회, 2022.06.24.).

법안 내용에 대해 관련 학회와 단체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몇몇 유관단체들은 심리사 법안에 대해 법안 내용시 자격과 경과조치, 전문영역에 대한 수정 및 삭제 등을 요구하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22.05.16.; 한국상담학회, 2022.05.09.). 또한 심리상담사 법안에 대해서는 자격 기준을 과도하게 완화해서 질 낮은 상담을 유도할 것이라는 국민청원 글 게시 및 반대 시위가 있었다(중앙일보, 2022.04.07.). 각

법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무분별한 민간자격증의 난립을 막고 전문적이고 신뢰로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마음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할 것이다.

전문적이고 신뢰로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심리상담 법제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영근 외, 2012; 김인규, 2018; 김정진, 2016; 이상민, 2020).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예: 미국, 일본 등)의 자격제도 사례와 인증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거나(김수임 외, 2021; 나고은 외, 2021; 노은빈 외, 2022; 신윤정, 이지연, 2021),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교육과정 및 수련 방식에 대한 표준화(김인규, 김승완, 2020; 김인규, 김승완, 2021) 등에 관해 다양한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

전문적인 심리상담에 필요한 자격의 여러 요소 중에서 응시 자격 및 수련 시간은 중요한 논점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수많은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다. 탐사보도 ‘상담시장 X파일’에 따르면, 2시간 만에 딸 수 있는 심리상담 자격증도 있고,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검색했을 때 80여 개의 업체가 검색되었다(국민일보, 2022.05.25.). 또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s://www.pqi.or.kr>)에서 ‘심리’를 검색하면 4,139건의 자격증이 검색되고(2023. 02. 20. 기준), ‘상담’으로는 5,725건 ‘심리상담’으로는 3,362건, ‘상담심리’ 83건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심리상담’으로 검색하여 나온 3,362개의 자격증 중 전년도 기준 응시자와 취득자 수에 대한 통계

가 제공되는 자격증은 37개에 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인이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 소지자가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 역시 문제이다. ‘상담시장 X파일’에 따르면, 2시간 만에 만 자격증을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에 상담자로 등록했을 때 3주 정도 안에 187명의 내담자가 모집되었다(국민일보, 2022.05.24.). 즉,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는 상담 관련 자격증이 난립하는 가운데 일반인은 그 중 어떤 자격증이 상담자의 전문성을 담보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만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수련요건 및 자격요건을 포함한 상담자 자격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심리상담에 필요한 자격과 수련에 대해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법률사무소 서회에서 20대 이상 1,6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따르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한다’에 전체 응답자의 96.5%가 ‘그렇다’에 응답하였고, ‘심리상담사는 전문지식, 훈련을 쌓아야 한다’에 97.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국민일보, 2022.06.09.). 이러한 응답결과는 일반인도 심리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 심리상담을 하거나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잠재적 수요자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수요자들이 충분한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을 가지고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Tower,

1994; 남성진, 2021). 정부의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1)에서도 이미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해서는 수요자 관점의 정책 추진 및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심리·상담 분야의 제도화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현 시점에 일반인, 즉 잠재적 내담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심리·상담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정 자격, 전문지식과 훈련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응시 자격(최정아, 2021)과 수련 시간이다. 먼저, 미국 LP(Licensed Psychologist)의 경우 주마다 규정에 차이가 있지만, LP 자격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심리학회에서 인증한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이수 후, 최소 2년의 상담 경험(3,000시간)을 요구하며, 그 중 1,500시간은 박사학위 이후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김수임 외, 2021). 더하여 박사 수준에서 취득할 수 있는 심리사(LP)와 구별하여 석사 수준의 전문상담사(LPC: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는 텍사스주의 경우 상담 혹은 관련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이수하고 수련감독자 지도하에 3,000시간의 상담 수련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다(Texas Behavioral Health Executive Council, n.d). OECD 기준과 국제응용심리학회, 국제심리연맹 등에서 발표한 심리사 핵심역량 기준에 따르면 최소 심리학 역량 과목을 학부와 대학원에서 이수하고, 전문가 관리 감독하에 석사 취득 후 2년 이상, 3,000시간 이상의 수련을 이수해야 한다(노은빈 외, 2022).

한편, 나고은 등(2021)은 미국의 석사 수준의 전문상담사(LPC)자격과 이와 연계된 프로그램 인증제도인 CACREP(The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 Related Educational Programs)를 우리나라 국가직무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NCS가 CACREP와 유사하게 심리상담의 개념, 범위, 역할을 명시하고 있어, NCS를 중심으로 상담 관련 석사, 박사학위 교육과정의 적합성을 인증해 주는 단체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CACREP는 CHEP(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가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1981년에 설립되어 현재 미국 내 대학과 대학에서 제공하는 상담 관련 석사,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있다(CACREP, n.d.).

선행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은 국가 수준에서 적절한 응시 자격과 수련요건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법안 발의에 앞서 응시 자격을 위한 교육과정 및 수련 시간에 대해서 구체화된 내용이 합의되고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발의된 법안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격과 수련요건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각 법안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각 법안의 구체적인 응시 자격 및 수련 시간에 대해 비교 분석한 내용은 표 1에 제시 하였다.

각 법안에서는 수련요건을 다르게 명시하고 있다. 심리상담사 법안과 마음건강증진 법안에서는 수련 시간을 제시하지 않고, 실무경력만 명시하고 있으며, 심리상담사 법안에서는 5년 이상, 마음건강증진 법안에서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응시 자격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달리 심리사 법안은 교육과정을 인증받은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한 학사와 석사졸업 후 2년, 3,000시간 수련을 요구하며, 석사와 박사졸업의 경우에는 1년, 1,000시간의

수련을 요구하였다. 한편 상담사 법안에서는 다른 법안과 달리 자격증 급수가 1급, 2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2급의 경우에 대학 및 대학원 수련 시간을 포함하여 2,000시간 이상이 요구되며, 1급은 2급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상담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과 2급 수련 시간을 포함한 5,000시간의 수련 시간을 요구 하였다. 그리고 심리상담사 법안, 마음건강증진, 심리사 법안은 자격증 취득 후 수련(실무교육)을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최소학력에 있어서도 각 법안마다 다르게 명시하고 있는데 먼저, 심리상담사 법안과 마음건강증진 법안, 상담사 법안(2급 기준)에서는 최소 대학 졸업 정도의 학력이 요구되며, 심리상담사 법안에서는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심리사 법안에서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련시간에 대해 학사와 석사졸업(2년, 3,000시간), 석사와 박사졸업(1년, 1,000시간)으로 수련 시간을 달리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석사와 박사졸업의 경우, 학사와 석사졸업 후 2년, 3,000시간 중 수련 기간 1년과 수련시간 2,000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4개 법안 내 각기 다른 응시 자격과 수련기준은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관련 학회 및 실무자 사이에서 갈등과 논란이 되고 있다(중앙일보, 2022.04.07.; 한국상담심리학회, 2022.05.16.; 한국상담학회, 2022.05.09.). 따라서 발의된 법안이 심리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기대하는 심리상담자의 적절한 자격 응시요건과 수련 시간이 반영된 법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상담심리사와 서비스 대상자인 내담자를 대상으

양난미 등 / 심리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한 인식조사: 상담심리사와 일반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표 1. 각 발의안에 따른 심리·상담 제공인력의 응시 자격 및 수련요건

자격 급수	응시 자격	수련요건	
심리상담사 법안 (최종윤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대학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취득 후 실무교육(수련)은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음 	
마음건강증진 법안 (전봉민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기타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자 • 대학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기타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자로서 시설에서 3년 이상 제3조에 따른 심리상담사 업무 혹은 그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취득 후 실무교육(수련)은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음 	
심리사 법안 (서정숙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등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2년 이상 3,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거나,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친 자 • 외국의 대학원에서 심리학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외국의 심리사 자격을 가진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 & 석사학위 후, 2년, 3,000시간 수련 • 석사 & 박사학위 후, 1년, 1,000시간 수련 • 자격증 취득 후 별도의 수련을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음 	
상담사 법안 (심상정 의원)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수련 시간 및 2급 수련 시간을 포함해 5,000시간 이상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학 및 심리학 등 과목을 이수한 후 졸업하고, 수련을 받은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수련 시간을 포함해 2,000시간 이상

로 두 집단의 인식과 인식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법제화 사례나 NCS 기반으로 한 직무에 대한 정의 및 영역, 법제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행 논문들은 다수 존재하나, 2020년 보건복지부의 용역으로

수행된 심리서비스 입법연구(보건복지부, 한국심리학회, 2020)에서 심리전문가 17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것 외에는 이해 당사자나 대상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심리서비스 입법연구(보건복지부, 한국심리학회, 2020) 결과,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최소 학력은 ‘학력 무관+수련’, ‘학사학위+수련’, ‘학사학위+석사학위+수련’, ‘석사학위+박사학위+수련’ 중에서 ‘학사학위+석사학위+수련’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일반화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연구참여자 174명 중 120명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였으며, 42명은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표집 내 심리상담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최소학력에 대한 응답 선택지는 ‘학력 무관+수련’, ‘학사학위+수련’, ‘학사학위+석사학위+수련’, ‘석사학위+박사학위+수련’으로 제시되어 ‘석사학위+수련’ 선택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포함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주요하게 제공하는 인력(예: 상담심리사)을 대상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연구 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유관 단체들을 모아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여러 가지 법제화와 관련한 쟁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22.06.09.; 한국상담학회, 2022.06.24.),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협의체 논의에 대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법제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당사자이자 서비스 제공자인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대상자인 일반인의 자격 응시요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들의 각기 다른 학력 및 회원 유형에 따른 차이 등을 고려하여,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들의 집단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법안과 관련된

논쟁(중앙일보, 2022.04.07.; 한국상담심리학회, 2022.05.16.; 한국상담학회, 2022.05.09.)에 있어, 상담심리사들의 학력 및 회원유형별에 따른 자격 응시요건에 있어 어떤 인식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자격 응시요건과 수련 시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의 견해차를 좁히고, 서비스 대상자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참여자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의 학력과 수련 요건 등의 자격에 대해 2022년 6월 2일부터 일주일간 (사)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후 대학생이 아닌 성인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응답을 수집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인 엠브레인(panel.co.kr)에 의뢰하였다. 엠브레인을 통해 심리상담을 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 464명을 성별, 연령, 지역의 비례 표집을 통해 추가로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대학생과 일반인 설문조사의 표본 수는 5% 미만의 표본오차를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연구 참여의 자발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에 대한 안내를 먼저 제시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만 본 설문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882명의 상담심리사, 799명의 일반인(대학생 335명, 일반 성인 46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상담심리사 집단은 여성이

양난미 등 / 심리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한 인식조사: 상담심리사와 일반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728명(82.5%)이었고 연령으로는 30대는 282명(32.0%), 40대는 262명(29.7%) 순으로 많았으며, 학력은 대학원 졸업 이상이 745명(84.5%)로 많았다. 일반인 집단의 경우 여성이 429명(53.7%)이었고 연령은 20대가 400명(50.1%)으

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학력은 대학교 재학 335명(41.9%), 대학교 졸업 305명(38.2%)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설문 참여자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설문 참여자의 특성 (명, %)

		상담심리사(n=882)	일반인(n=799)
성별	남	152(17.3)	369(46.2)
	여	728(82.5)	429(53.7)
	기타	2(0.2)	1(0.1)
연령	만 29세 미만	110(12.5)	400(50.1)
	만 30~39세	282(32.0)	88(11.0)
	만 40~49세	262(29.7)	103(12.9)
	만 50~59세	180(20.4)	112(14.0)
	만 60세 이상	47(5.3)	94(11.8)
학력	고등학교 졸업 미만	-	9(1.1)
	고등학교 졸업	-	88(11.0)
	대학교 재학	-	335(41.9)
	대학교 졸업	137(15.5)*	305(38.2)
	대학원 졸업	745(84.5)**	62(7.8)
지역	서울	406(46.0)	177(22.2)
	경기도, 인천	232(26.3)	199(24.9)
	강원도, 제주도	31(3.5)	18(2.3)
	충청도, 대전, 세종	57(6.5)	72(9.0)
	경상도, 부산, 대구, 울산	117(13.3)	274(34.3)
	전라도, 광주	39(4.4)	59(7.4)
회원 형태	1급 자격 소지	196(22.2)	-
	2급 자격 소지	283(32.1)	-
	정회원(석사학위 이상, 자격 미소지)	176(20.0)	-
	준회원(석사과정 재학, 자격 미소지)	227(25.7)	-

주. *석사과정 재학 134명 포함, **석사졸업 = 453명, 박사과정 = 170명, 박사졸업 = 122명

설문문항 구성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자인 상담심리사와 서비스의 잠재적 수혜자인 일반인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의 전문성의 기준에 대해서 교육학과 교수 1인, 심리학과 교수 1인, 교육학과 박사과정 1인, 심리학과 박사과정 1인으로 구성된 연구진 간의 의논 하에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학력 및 수련 기간에 대해서 일반인과 상담심리사에게 특정 전공을 제한하여 제시하기보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최소 응시 자격으로 필요한 학력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학력에 대한 문항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학사졸업, 석사졸업, 박사졸업 3가지로 묻기보다는 심리서비스입법연구(보건복지부, 한국심리학회, 2020)에서 석사졸업이 문항에 없는 점과 심리사 법안에서 학사 및 석사졸업으로 되어 있는 점과 심리상담사, 마음건강증진법안, 상담사 법안에서 관련 전공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졸업 여부가 관련 전공 졸업 여부를 의미할 수 있도록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석사졸업 혹은 박사졸업은 이전 학위과정의 관련 전공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학위만 관련 전공이면 응시자격을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학사와 석사졸업, 석사와 박사졸업은 두 학위과정이 모두 관련 전공이어야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설문 문항에 학사졸업, 석사졸업, 학사 및 석사졸업, 박사졸업, 석사 및 박사졸업으로 제시하여 다양한 학력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련 기간은 선행연구들(김수임 외, 2021; 노은빈 외, 2022; 신윤정, 이지연, 2021)에서 나타난 3,000시간(대략 3년 동안 주 4일 수련)

을 최대로 하고, 최소는 0시간(실무 수련 필요 없음)으로 하였다. 수련 기간(실무실습 기간)에 대해서, 대략 1년 동안 주 4일 수련 시 1,000시간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취득 시, 석사과정 이상일 때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이 요구된다는 점에 근거하였다(한국상담심리학회, n.d). 상담심리사 2급 취득을 위해 필요한 1년의 상담경력은 단순 근무시간이나 교육 시간이 아닌 실무(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접수면접, 집단상담 참여),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수퍼비전, 공개사례 발표, 상담사례 연구 활동 등을 포함한다(한국상담심리학회, n.d). 그리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취득 시 학사졸업 이상과 1년의 기간이 요구되며 총 1,000시간이 요구되는데(한국임상심리학회, n.d),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략 1년 동안 주 4일 수련 시 1,000시간으로 제시하였다. 일반인과 달리 상담심리사에게는 학위과정 중 필요한 수련 시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학위과정 중에 대학원에서 실무실습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숙영, 김창대, 2002; 최해림, 김영혜, 2006)과 미국의 텍사스주 기준으로 전문상담사(LPC) 취득 요건 중 하나로 ‘최소 100시간의 내담자와 대면 경험을 포함한 300시간의 수련 감독’이 학위 과정 중에 완료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였다(Texas Behavioral Health Executive Council, n.d). 더불어 상담심리사 2급 취득을 위해 실제 학위과정 중에 실습 및 수련을 받는 것과 대학원 교과목 이수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학위과정에 있어 학사나 석사과정뿐만 아니라 박사과정까지 고려해본다면 실제로 학위를 받기 위해서 교육기간이 길 수 있다는 점과 캘리포니아주 기준으

표 3. 상담심리사, 일반인 대상 설문 문항 구성

문항		내용
공통 문항	제공인력의 전문성 기준	학력 수준(학사, 석사, 학사 및 석사, 박사, 석사 및 박사) 및 수련 기간(0~3,000시간)
상담심리사 대상 추가 문항	제공인력의 학위과정 중 수련시간	학위과정 중 필요한 수련시간(0~1,000시간)

로 미국의 LP(Licensed Psychologist)의 경우 3,000시간 중 1,500시간을 박사학위 중에 인정해 주는 것을 고려하였다. 이를 토대로 0시간~1,000시간 이내로 학위과정 중 필요한 수련 시간(실무실습 기간)을 제시하였다. 표 3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하였고, 구체적인 문항과 문항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분석방법

SPSS 26.0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최소 응시 자격의 학력 수준(학사졸업, 석사졸업, 학사 및 석사졸업, 박사졸업, 석사 및 박사졸업)에 대해서 상담심리사와 일반인 집단의 응답 빈도를 산출하고 이를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필요 수련 기간(예: 0시간(수련 필요없음), 1,000시간(대략 1년 동안 주 4일 수련 등))을 0시간~3,000시간까지 제시하여 상담심리사와 일반인 집단의 응답 빈도를 산출하고 이를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담심리사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학위과정 중 필요 수련 기간(0시간, 100시간, 200시간, 400시간, 800시간, 1,000시간)에 대해서 응답 빈도를 산출하고 이를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

1.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최소학력 및 필요 수련 기간: 상담심리사와 일반인 대상

1)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최소학력 수준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의 최소학력 수준에 있어 상담심리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차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표 4). 연구 결과, 상담심리사는 ‘석사졸업’(68.8%)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일반인들은 ‘학사 졸업’(25.7%)과 ‘석사졸업’(25.7%)을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상담심리사의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의 최소 응시 자격을 학사졸업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체의 4.5% 미만으로 매우 낮았고, 학사 및 석사졸업을 포함한 ‘석사졸업’이 전체의 89.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석사 및 박사졸업을 포함한 ‘박사졸업’은 6.3%였다. 이와 달리 일반인의 경우 학사졸업이 25.7%, 학사 및 석사졸업을 포함한 ‘석사졸업’은 45.6%, 석사 및 박사를 포함한 ‘박사졸업’은 28.8%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상담심리사와 일반인에서 응답 비율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chi^2(4)=429.98, p<.001$).

표 4.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최소학력 수준 (%)

학력	상담심리사(n=882)	일반인(n=799)	$\chi^2(df)$
학사졸업	40(4.5)	205(25.7)	429.98*** (4)
석사졸업	607(68.8)	205(25.7)	
학사 및 석사졸업	180(20.4)	159(19.9)	
박사졸업	6(0.7)	102(12.8)	
석사 및 박사졸업	49(5.6)	128(16.0)	

주. *** $p < .001$

2)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필요 수련 기간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필요 수련 기간에 있어 상담심리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차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표 5).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필요 수련 기간에 대해서, 상담심리사(35.4%), 일반인(29.2%) 모두 ‘1,000시간’에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일반인은 ‘400시간’(17.0%), ‘800시간’(15.9%), ‘200시간’(12.8%), ‘3,000시간’(9.1%), ‘2,000시간’(8.9%) 순으로 응답하였고, 상담심리사는 ‘2,000시간’(17.8%), ‘3,000시간’(12.1%),

‘800시간’(11.7%), ‘200시간’(10.7%)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일반인에 비해 상담심리사가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필요 수련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 경향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상담심리사와 일반인에서 응답 비율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chi^2(7)=77.15, p < .001$).

2.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최소학력 및 필요 수련 기간: 상담심리사 대상

1)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최소학력

표 5.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필요 수련 기간 (%)

수련 기간	상담심리사(n=882)	일반인(n=799)	$\chi^2(df)$
0시간(실무 수련 필요없음)	8(0.9)	5(0.6)	77.15*** (7)
100시간(1학기 일주일 하루 수련)	34(3.9)	52(6.5)	
200시간(2학기 일주일 하루 수련)	94(10.7)	102(12.8)	
400시간(1학기 일주일 4일 수련)	67(7.6)	136(17.0)	
800시간(2학기 일주일 4일 수련)	103(11.7)	127(15.9)	
1,000시간(대략 1년 동안 주 4일 수련)	312(35.4)	233(29.2)	
2,000시간(대략 2년 동안 주 4일 수련)	157(17.8)	71(8.9)	
3,000시간(대략 3년 동안 주 4일 수련)	107(12.1)	73(9.1)	

주. *** $p < .001$

수준: 상담심리사 회원 형태별

상담심리사 집단 내에서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최소학력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석사과정 이상인 준회원과 석사졸업 이상이면서 자격증이 없는 정회원, 2급,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구분하여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최소학력 수준에 대한 응답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표 6). 그 결과, 준회원(67.0%), 정회원(63.6%), 2급 자격증(72.1%), 1급 자격증(70.9%) 소지자 모두가 ‘석사졸업’이 적절한 학력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1급 자격증 소지자에서 다른 회원들에 비해 ‘석사 및 박사졸업’(10.2%)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회원 형태별로 응답 비율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chi^2(12)=30.39, p<.01$).

2)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최소학력 수준: 상담심리사 최종학력별

상담심리사 집단을 최종학력별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최소학력 수준에 대한 응답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표 7). 그 결과, 석사과정 및 수료자(69.4%), 석사졸업자(72.6%), 박사과정 및 수료자(68.2%), 박사졸업자(56.6%) 모두에서 ‘석사졸업’으로 응답하였다. 다른 학력에 비해 박사졸업자에서는 ‘석사 및 박사졸업’(17.2%)에 대한 응답 비율이

표 6.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최소학력 수준: 상담심리사 회원 형태별 (%)

학력	준회원 (n=227)	정회원 (n=176)	2급 자격증 (n=283)	1급 자격증 (n=196)	$\chi^2(df)$
학사졸업	18(7.9)	9(5.1)	9(3.2)	4(2.0)	
석사졸업	152(67.0)	112(63.6)	204(72.1)	139(70.9)	
학사 및 석사졸업	43(18.9)	43(24.4)	63(22.3)	31(15.8)	30.39** (12)
박사졸업	1(0.4)	2(1.1)	1(0.4)	2(1.0)	
석사 및 박사졸업	13(5.7)	10(5.7)	6(2.1)	20(10.2)	

주. ** $p<.01$

표 7.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최소학력 수준: 상담심리사 최종학력별 (%)

학력	석사과정 및 수료(n=134)	석사졸업 (n=453)	박사과정 및 수료(n=170)	박사졸업 (n=122)	$\chi^2(df)$
학사졸업	12(9.0)	17(3.8)	4(2.4)	5(4.1)	
석사졸업	93(69.4)	329(72.6)	116(68.2)	69(56.6)	
학사 및 석사졸업	25(18.7)	96(21.2)	36(21.2)	22(18.0)	80.51*** (12)
박사졸업	1(0.7)	0(0.0)	0(0.0)	5(4.1)	
석사 및 박사졸업	3(2.2)	11(2.4)	14(8.2)	21(17.2)	

주. *** $p<.001$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최종학력별로 응답 비율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chi^2(12)=80.51, p<.001$).

3)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최소학력 수준: 상담심리사 수련 기간별(1,000시간 기준)

상담심리사 집단 내에서 필요 수련 기간 응답을 기존 학회 2급 수련기간인 1,000시간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였을 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최소학력 수준에 대한 응답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표 8). 이를 통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수련 기간과 최소학력 수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1,000시간 이상 응답자(65.8%), 1,000시간 미만 응답자(74.5%)가 ‘석사졸업’으로 응답하였다. 1,000시간 이상 응답자에서 ‘학사 및 석사졸업’(24.7%)이 1,000시간 미만 응답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1,000시간 미만 응답자에서는 ‘학사 졸업(8.8%)’을 좀 더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최종학력별로 응답 비율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chi^2(4)=40.49, p<.001$).

4)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필요 수련 기간: 상담심리사 회원 형태별

상담심리사 집단 내에서 자격증 보유 여부

표 8.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최소학력 수준: 상담심리사 수련 기간별(1,000시간 기준) (%)

학력	1,000시간 이상(n=576)	1,000시간 미만(n=306)	$\chi^2(df)$
학사졸업	13(2.3)	27(8.8)	
석사졸업	379(65.8)	228(74.5)	
학사 및 석사졸업	142(24.7)	38(12.4)	40.49*** (4)
박사졸업	6(1.0)	0(0)	
석사 및 박사졸업	36(6.3)	13(4.2)	

주. *** $p<.001$

표 9.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필요 수련 기간: 상담심리사 회원 형태별 (%)

수련 기간	준회원 (n=227)	정회원 (n=176)	2급 자격증 (n=283)	1급 자격증 (n=196)	$\chi^2(df)$
0시간(실무 수련 필요없음)	2(0.9)	2(1.1)	3(1.1)	1(0.5)	
100시간(1학기 일주일 하루 수련)	16(7.0)	10(5.7)	7(2.5)	1(0.5)	
200시간(2학기 일주일 하루 수련)	38(16.7)	22(12.5)	31(11.0)	3(1.5)	
400시간(1학기 일주일 4일 수련)	24(10.6)	18(10.2)	15(5.3)	10(5.1)	
800시간(2학기 일주일 4일 수련)	28(12.3)	18(10.2)	40(14.1)	17(8.7)	110.96*** (21)
1,000시간(대략 1년 동안 주 4일 수련)	87(38.3)	58(33.0)	105(37.1)	62(31.6)	
2,000시간(대략 2년 동안 주 4일 수련)	21(9.3)	24(13.6)	57(20.1)	55(28.1)	
3,000시간(대략 3년 동안 주 4일 수련)	11(4.8)	24(13.6)	25(8.8)	47(24.0)	

주: *** $p<.001$

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최소학력 수준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원 형태별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필요 수련 기간에 대한 응답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표 9). 그 결과, 준회원(38.3%), 정회원(33.0%), 2급 자격증 소지자(37.1%), 1급 자격증 소지자(31.6%)가 ‘1,000시간’에 응답하였다. 1급자격증에서는 ‘2,000시간(28.1%)’로 1,000시간 응답과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2급 자격증 소지자 이상에서는 65% 이상이 ‘1,000시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응답 경향이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회원 형태별로 응답 비율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chi^2(21)=110.96, p<.001$).

5)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필요 수련 기간: 상담심리사 최종학력별

상담심리사의 최종학력별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필요 수련 기간에 대한 응답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표 10). 그

결과, 석사과정 및 수료자(35.1%), 석사졸업자(37.1%), 박사과정 및 수료자(33.5%), 박사졸업자(32.0%)는 ‘1,000시간’에 응답하였다. 박사졸업자에서는 ‘2,000시간’(32.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이 높아질수록 수련 기간이 길어져야 한다는 응답 경향이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최종학력별로 응답 비율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chi^2(21)=81.72, p<.001$).

2.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최소학력 및 필요 수련 기간: 일반인 대상

1)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최소학력 수준: 일반인 심리상담 경험 여부

일반인을 세분화하여 ‘심리검사 및 평가를 포함한 심리상담을 경험한 사람’과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심리상담 경험 유무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최소학력 수준에 대한 응답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표 11). 그 결과 심리상담 경험

표 10.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필요 수련 기간: 상담심리사 최종학력별 (%)

수련 기간	석사과정 및 수료 (n=134)	석사졸업 (n=453)	박사과정 및 수료 (n=170)	박사졸업 (n=122)	$\chi^2(df)$
0시간(실무 수련 필요없음)	2(1.5)	5(1.1)	0(0.0)	1(0.8)	
100시간(1학기 일주일 하루 수련)	10(7.5)	12(2.6)	8(4.7)	3(2.5)	
200시간(2학기 일주일 하루 수련)	26(19.4)	49(10.8)	13(7.6)	6(4.9)	
400시간(1학기 일주일 4일 수련)	19(14.2)	32(7.1)	11(6.5)	4(3.3)	81.72***
800시간(2학기 일주일 4일 수련)	16(11.9)	61(13.5)	20(11.8)	6(4.9)	(21)
1,000시간(대략 1년 동안 주 4일 수련)	47(35.1)	168(37.1)	57(33.5)	39(32.0)	
2,000시간(대략 2년 동안 주 4일 수련)	8(6.0)	73(16.1)	37(21.8)	39(32.0)	
3,000시간(대략 3년 동안 주 4일 수련)	6(4.5)	53(11.7)	24(14.1)	24(19.7)	

주. *** $p<.001$

표 11.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최소학력 수준: 일반인 심리상담 경험자, 미경험자 학력 수준 (%)

학력	심리상담 경험자(n=374)	심리상담 미경험자(n=425)	$\chi^2(df)$
학사졸업	90(24.1)	115(27.1)	
석사졸업	104(27.8)	101(23.8)	
학사 및 석사졸업	81(21.7)	78(18.4)	4.68(4)
박사졸업	46(12.3)	56(13.2)	
석사 및 박사졸업	53(14.2)	75(17.6)	

자는 ‘석사졸업’(27.8%)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학사졸업’(24.1%)순으로 나타났다. 미경험자는 ‘학사졸업’(27.1%)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으로 ‘석사졸업’(23.8%)순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필요 수련 기간: 일반인 심리상담 경험 여부

일반인을 ‘심리검사 및 평가를 포함한 심리상담을 경험한 사람’과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심리상담 경험 유무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필요 수련 기

간에 대한 응답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표 12). 그 결과, 심리상담 경험자(29.7%), 심리상담 미경험자(28.7%)가 ‘1,000시간’에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학위과정 중 필요 실무실습 기간: 상담심리사 대상

1)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학위과정 중 필요 실무실습 기간: 상담심리사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학위과정 중 필요 실무실습 기간에 대해서 상담심리사에게

표 12.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필요 수련 기간: 일반인 심리상담 경험자, 미경험자 (%)

수련 기간	심리상담 경험자 (n=374)	심리상담 미경험자 (n=425)	$\chi^2(df)$
0시간(실무 수련 필요없음)	2(0.5)	3(0.7)	
100시간(1학기 일주일 하루 수련)	25(6.7)	27(6.4)	
200시간(2학기 일주일 하루 수련)	49(13.1)	53(12.5)	
400시간(1학기 일주일 4일 수련)	61(16.3)	75(17.6)	
800시간(2학기 일주일 4일 수련)	72(19.3)	55(12.9)	11.09(7)
1,000시간대략 1년 동안 주 4일 수련)	111(29.7)	122(28.7)	
2,000시간대략 2년 동안 주 4일 수련)	29(7.8)	42(9.9)	
3,000시간대략 3년 동안 주 4일 수련)	25(6.7)	48(11.3)	

양난미 등 / 심리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한 인식조사: 상담심리사와 일반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를 물었다. 표 13을 보면, 상담심리사는 200시간(30.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1,000시간(23.2%), 800시간(17.5%), 400시간(16.3%), 100시간(10.9%), 0시간(1.6%) 순으로 나타났다.

2)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학위과정 중 필요 실무실습 기간: 상담심리사 최종학력별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학위과정 중 필요 실무실습 기간에 대해 상담심리사의 최종학력별로 응답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표 14). 석사과정 및 수료자(39.6%), 석

사졸업자(30.2%), 박사졸업자(28.7%)에서는 200시간의 응답이 많았으며, 박사과정 및 수료자(26.5%)에서는 1,000시간으로 응답이 많았다. 석사졸업자 이상에서 400시간 이상의 응답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최종 학력별로 응답 비율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chi^2(15)=26.56, p<.05$).

3)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학위과정 중 필요 실무실습 기간: 상담심리사 회원 형태별

상담심리사 집단 내에서 자격증 보유 여부

표 13.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학위과정 중 필요 실무실습 기간 (%)

수련 기간	상담심리사(n=882)
0시간(실무 수련 필요없음)	14(1.6)
100시간(1학기 일주일 하루 수련)	96(10.9)
200시간(2학기 일주일 하루 수련)	269(30.5)
400시간(1학기 일주일 4일 수련)	144(16.3)
800시간(2학기 일주일 4일 수련)	154(17.5)
1,000시간(대략 1년 동안 주 4일 수련)	205(23.2)

표 14.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학위과정 중 필요 실무실습 기간: 상담심리사 최종학력별 (%)

수련 기간	석사과정 및 수료 (n=134)	석사졸업 (n=453)	박사과정 및 수료 (n=170)	박사졸업 (n=122)	$\chi^2(df)$
0시간(실무 수련 필요없음)	4(3.0)	9(2.0)	1(0.6)	0(0.0)	26.56*(15)
100시간(1학기 일주일 하루 수련)	22(16.4)	48(10.6)	16(9.4)	9(7.4)	
200시간(2학기 일주일 하루 수련)	53(39.6)	137(30.2)	44(25.9)	35(28.7)	
400시간(1학기 일주일 4일 수련)	14(10.4)	75(16.6)	33(19.4)	20(16.4)	
800시간(2학기 일주일 4일 수련)	20(14.9)	75(16.6)	31(18.2)	28(23.0)	
1,000시간(대략 1년 동안 주 4일 수련)	21(15.7)	109(24.1)	45(26.5)	30(24.6)	

주. * $p<.05$

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학위과정 중 필요 실무실습 기간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원 형태별로 응답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표 15). 준회원(35.2%), 정회원(27.8%), 2급 자격증 소지자(26.9%), 1급 자격증 소지자(32.7%)는 ‘200시간’의 응답을 많이 보였으며, 2급 자격증 소지자에서는 ‘1,000시간’도 26.9%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련 기간의 비율을 합산했을 때 ‘400시간’ 이상의 응답비율의 합산은 준회원 45.8%, 정회원 54%, 2급 자격증 62.6%, 1급 자격증

소지자 64.8%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회원 형태별로 응답 비율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chi^2(15)=57.78, p<.001$).

4)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학위과정 중 필요 실무실습 기간: 상담심리사 수련 기간별(1,000시간 기준)

상담심리사 집단 내에서 필수 수련 기간 응답을 기존 학회 2급 수련기간인 1,000시간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였을 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학위과정 중 필요 실무실습 기간

표 15.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학위과정 중 필요 실무실습 기간: 상담심리사 회원 형태별 (%)

수련 기간	준회원 (n=227)	정회원 (n=176)	2급 자격증 (n=283)	1급 자격증 (n=196)	$\chi^2(df)$
0시간(실무 수련 필요없음)	5(2.2)	4(2.3)	4(1.4)	1(0.5)	57.78*** (15)
100시간(1학기 일주일 하루 수련)	38(16.7)	28(15.9)	26(9.2)	4(2.0)	
200시간(2학기 일주일 하루 수련)	80(35.2)	49(27.8)	76(26.9)	64(32.7)	
400시간(1학기 일주일 4일 수련)	34(15.0)	16(9.1)	61(21.6)	33(16.8)	
800시간(2학기 일주일 4일 수련)	35(15.4)	33(18.8)	40(14.1)	46(23.5)	
1,000시간(대략 1년 동안 주 4일 수련)	35(15.4)	46(26.1)	76(26.9)	48(24.5)	

주. *** $p<.001$

표 16.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학위과정 중 필요 실무실습 기간: 상담심리사 수련 기간별(1,000시간 기준) (%)

수련 기간	1,000시간 이상(n=576)	1,000시간 미만(n=306)	$\chi^2(df)$
0시간(실무 수련 필요없음)	4(0.7)	10(3.3)	208.24*** (5)
100시간(1학기 일주일 하루 수련)	24(4.2)	72(23.5)	
200시간(2학기 일주일 하루 수련)	130(22.6)	139(45.4)	
400시간(1학기 일주일 4일 수련)	98(17.0)	46(15.0)	
800시간(2학기 일주일 4일 수련)	126(33.7)	28(9.2)	
1,000시간(대략 1년 동안 주 4일 수련)	194(33.7)	11(3.6)	

주. *** $p<.001$

에 대한 응답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표 16). 그 결과, 1,000시간 이상 응답자에서는 60% 이상이 '800시간' 이상을 응답한 반면 1,000시간 미만 응답자에서는 70% 이상이 '200시간' 이하를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필수 수련 기간별로 응답 비율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chi^2(5)=208.24$, $p<.001$).

논 의

본 연구는 2022년 발의된 4개의 심리상담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상담심리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 응시 자격에 대한 인식을 일반인과 상담심리사를 비교하여 알아보고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도화 연구에서 유관 단체에 요청한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 상담심리사 대상으로 진행된 인식조사 결과와 일반인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최소 응시 학력 수준은 상담심리사 집단에서는 '석사 졸업'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일반인 집단에서는 '학사졸업'과 '석사졸업'의 비율이 높아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상담심리사 회원 형태 중 1급 자격증 소지자는 다른 회원 형태에 비교해서 '석사 및 박사졸업'의 응답 경향이 더 높았고, 최종학력별에서도 박사 졸업자가 다른 학력보다 '석사 및 박사졸업'의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심리사 집단에서 '석사졸업'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결과는 미국에서 전문상담사(LPC)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상담 혹은 관련 전공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것(김수임 외, 2021; 신윤정, 이지연, 2021)과 비슷하게 상담심리사 집단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4개 법안 중에서 3개 법안 역시 유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심리상담사 법안(대학원 또는 대학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마음건강증진 법안(대학원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대학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상담사 법안(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학 및 심리학 등 과목을 이수한 후 졸업한 자)에서 학력 요건이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명시된 부분은 '석사졸업' 응답 결과와 대체로 일치된 결과이다. 상담심리사 집단에서는 미국의 심리사(LP)에서 요구되는 '박사졸업'보다는 전문상담사(LPC)에서 요구되는 '석사졸업'의 형태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심리학회(APA)에서도 2016년 Master's Summit에서 '석사 수준의 심리학자 훈련'에 대해 질적인 관리 및 인증(Quality Assurance and Accreditation), 규제 및 면허(Regulatory and Licensure), 실무범위(Scope of Practice), 시장과 인력(Marketplace and Workforce) 등의 네 개의 주제를 논의하였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Minority Fellowship Program, 2017). 그리고 박사학위에 기반한 LP(심리사) 이외에 석사학위에 기반한 실무자격을 신설하려는 움직임과 가능성(Campbell et al., 2018; Hughes & Diaz-Granados, 2018)을 보였고 2021년 2월에는 투표를 통해 건강서비스 심리학 분야인 상담심리, 임상심리, 학교심리 전공의 석사 수준 프로그램 인증기준을 승인하였다(APA, 2021.03.03.).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상담심리사 집단에서 '석사졸업'이 가장 많

이 나타나는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반인 집단에서는 ‘석사졸업’과 ‘학사졸업’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난 점은 상담심리사 집단이 일반인 집단과 비교하여 엄격한 학력 요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일반인 집단에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필요 학력 요건에 대해 좀 더 낮은 수준의 학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력만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절한 교육을 받거나 공신력이 있는 자격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가 상담심리사 집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담심리사의 전문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상담심리사의 전문성 홍보를 위해서 관련 학회에서는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각 학회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및 심리상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고 있으며, 회원용 홈페이지와 일반인용 홈페이지를 따로 두어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직역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전문성을 잘 부각시켜, 일반인들에게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필수 수련 기간에 있어서 상담심리사와 일반인 집단 모두에서 ‘1,000시간’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나, 상담심리사 집단에서 일반인 집단에 비해 많은 수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응답 경향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수련 기간에 있어서 상담심리사 집단에서 좀 더 많은 수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준다. 한편 상담심리사 집단을 최종학력별로 본 결과에서도 ‘1,000시간’을 가장 많이 응답하는 형태로 보였으나, 학력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수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응답 경향을 보였다. 특히 박사 졸업자의 경우에는 ‘3,000시간’ 응답 비율이 다른 학력에 비해 높았다. 회원 형태별로 본 결과에서도 회원 형태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수련 기간에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 상담심리사 집단에서 회원 형태와 학력이 높아질수록 보다 많은 수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사졸업으로 갈수록 ‘3,000시간’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는 형태는 노은빈 등(2022)의 연구에서 ‘2년 이상 3,000시간 이상이 필요하다’와 전문심리사(LP)와 전문상담사(LPC)에서 ‘수련 감독 아래에서 3,000시간을 요구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는 아니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전문성을 위한 수련 시간이 길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학력과 회원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각자의 수련 기간이 다르고, 실무나 수련 등의 과정 경험의 차이에 의해서 적절한 수련 기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석사과정 및 수료와 박사졸업을 비교했을 때 2,000시간~3,000시간, 400시간 이하의 응답 비율에서의 차이가 나타났고, 회원 형태에서도 1급 자격증 소지자와 준회원에서 응답 비율의 차이가 나타났다. 적절한 수련 기간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학력 및 자격증에 따른 형태가 아닌 수련 기간 및 실무기간을 반영하여 이를 살펴보는 것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다양한 전공과 직렬별 수련 방식이 다르고, 기간이 상이한 측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담심리사 집단과 일반인 집단에서 ‘1,000시간’에 가장 많은 응답

을 보인 점과 상담심리사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긴 수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 점은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에 있어서 실무수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로, 일반인들은 자격취득에 있어서 수련의 필요성에 96.5%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연구결과(김석웅, 2023)와 맥을 같이하며, 이는 일반인 집단에서도 수련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다.

셋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학위과정 중 필요 실무실습 기간에 대해서 상담심리사 집단에서는 전체 ‘200시간’의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를 최종학력별로 본 결과에서는 석사졸업 이상에서는 ‘400시간’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특히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회원 형태에서도 준회원, 정회원, 2급 자격증 소지자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갈수록 학위 과정 중 실무실습 기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응답 경향을 보였다. 학력이 높아지고 회원형태가 준회원에서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갈수록 학위 과정 중 실무실습 기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학위 과정 중 많은 실무실습이 필요하다는 것과 더불어 학위 과정 중에 많은 실무실습 시간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심리사(LP)에서도 총 3,000시간 중 1,500시간은 박사학위과정 중에 인정해주는 점과 전문상담사(LPC)에서 학위과정 중 인턴십 등 기간이 필요한 점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무실습 기간에 있어 ‘1,000시간 이상 응답자’들에게서 학위과정 중 필요 실무실습 기간이 ‘800시간’과 ‘1,000시간’이 가장 많이 나타난 점은 수련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학위과정 중 충분한 수련 경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원 내 석사와 박사학위 교육과정 중 개설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과목에서 둘 다 상담 실습과목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이숙영, 김창대, 2002). 또한 상담 실습과목에 관한 이수율이 석사와 박사과정 중에 한 과목 정도로 매우 낮아서 상담 실습 필요성은 크게 느끼나 실제 이수율이 낮은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대학원 내 상담 실습과목 개설이 부족하고 상담 현장실습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최해림, 김영혜, 2006). 안수정 등(2021)은 상담전문가로 정의되기 위해 필요조건 중 전문적 자질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다음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과 실제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체계적인 수련 과정(인턴십)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발의된 법안 중 상담사 법안에서는 다른 법안들과 달리 학위과정 중 수련 시간을 포함한 점도 학위과정 중 실무실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위 과정 중 실무실습 기간에 대한 적절성과 더불어 충분한 실습이 잘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습과목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적절한 수련 기간 및 방식에 대한 합의가 제도적으로 논의되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응시 자격이 될 수 있는 학력 및 실무수련 등에 있어 서비스 제공자인 상담심리사와 서비스 수혜자인 일반인들이 가진 인식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법제화의 논의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상담심리사 집단으로만 자료가 수집이 이루어졌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김석용(2023)의 연구에서도 ‘심리상담을 누구에게 제공 받았는지’에 대해 ‘상담심리사’라는 응답이 64.2%로 달해서 ‘상담심리사가 심리상담을 한다’는 인식이 일반인에게 일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나, 현재 상담심리사 이외에도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본 연구의 결과가 다양한 직업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모두를 대표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직업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각기 다른 다양한 직업과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도화 연구를 위해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학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인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표본오차를 고려하여 표집을 하였으나, 일반인은 799명으로 일반인의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표본이 부족하고 일반인 집단의 경우 연령은 20대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경상도, 부산, 대구, 울산의 비중이 높은 점 역시 한계이다. 또한 설문 참여 일반인의 경우 상담심리사와 달리 최소학력과 수련 기간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설문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에 생각하는 심리·상담 서비스 관

련 업무에 대한 이해나 수련에 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수련 기간 포함되는 내용에 있어 상담 실무 경험만을 나타내는 것인지, 교육 시간 및 교과과정 이수 시간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더불어 수련 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직업 간의 방식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령과 지역 등을 균등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문항에 있어서도 좀 더 세분화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시하여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전지식 간의 개인차(상담경험, 상담자 근무여건이나 급여수준 등)는 문항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나 사전 연구를 통해 영향을 확인하거나 연구에서 통제 변인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연구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발의된 4개 법안에 여러 쟁점 중에서 응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 학력과 수련 기간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법제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내용은 자격명, 직무 범위, 전공명, 응시자격 등 다양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교육과정의 내용과 이수 학점, 전공에 대한 범위 등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서 법제화 내에 담겨 있는 수련 기간 및 학력 요건에 대해서 상담심리사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가 심리·상담 분야의 제도화라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연구에 관련된 기초자료와 한국상담심리학회 입장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조사되긴 하였으나 일반인과 상담심리사 양쪽 집단의 시각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가 계속되어 활발히 치열하게 논의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안이 완성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1).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 국민일보 (2022.05.24.). 영터리 심리상담사 자격증, 3주 만에 187명이 났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07802&code=61121111&sid1=soc> 에서 2023.02.15. 검색
- 국민일보 (2022.05.25.). 2시간에 딴 자격증... 영터리 심리상담사 양산.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47019> 에서 2023.02.15. 검색
- 국민일보 (2022.06.09.). 심리사냐 상담사냐... 심리상담, 법이 없다.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7159178> 에서 2023.02.15. 검색
- 김석웅 (2023). 심리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9(3), 547-562.
- 김수임, 최나연, 정문주 (2021). 국내 심리상담 자격제도 법제화를 위한 제언: 미국과 일본의 사례 검토. 상담학연구, 22(5), 11-21.
- 김영근, 김현령, 이정인, 신재훈, 신동미, 이상민 (2012). 한국 상담사법 제정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41-670.
- 김인규 (2018). 국내 상담사격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75-493.
- 김인규, 김승완 (2020). 심리상담 국가직무능력 표준(NCS)을 활용한 심리상담사격 표준화 방안. 교육종합연구, 18(3), 43-64.
- 김인규, 김승완 (2021). NCS 기반 상담 자격 법제화 연구 - FGI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종합연구, 19(2), 37-58.
- 김정진 (2016). 상담사의 법적 의무규정과 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 상담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 나고은, 허난설, 이상민 (2021). 심리상담 법제화 방향성: 미국의 전문상담사(LPC)와 인증프로그램(CACREP)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6), 1-15.
- 남성진 (2021). 정신건강 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정신질환자의 수요자 인식에 관한 연구.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5(4), 616-623.
- 노은빈, 김현진, 최기홍 (2022). 국제 수준의 심리사 자격 기준, 핵심역량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법제화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1(3), 243-255.
- 보건복지부, 한국심리학회 (2020).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 세종: 저자.
- 신윤정, 이지연 (2021). 심리상담서비스 국가 자격 관리 방안 제언: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4), 39-49.
- 안수정, 안하얀, 서영석 (2021). 상담전문가의 정체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 113-158.
- 이상민 (2020). 심리상담 법령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 547-557.
- 이숙영, 김창대 (2002). 상담 전공 대학원 교육 과정 표준화 연구. *교육학연구*, 40(2), 231-250.
- 중앙일보 (2022.04.07.). 코로나 시대 심리상담 벗어나 품질 딜레마, 학계도 공방 중.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1732> 에서 2023.02.01. 검색
- 최정아 (2021). 심리상담 법제화 추진 동향 및 쟁점. *상담학연구*, 22(4), 11-27.
- 최해림, 김영혜 (2006).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 상담심리 석박사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13-73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심리서비스 활성화 위한 제도 정립 연구. <https://www.kihasa.re.kr/research/project/view?seq=47254>
- 한국상담심리학회 (n.d). 상담심리사자격증-수련안내-상담심리사 2급 자격 취득 절차. https://krcpa.or.kr/member/sub04_2_2.asp 에서 2023.03.19. 검색
- 한국상담심리학회 (2022.05.16.). 심리사 법안 (서정숙 의원 발의)에 대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수정 요구. <https://krcpa.or.kr>.
- 한국상담심리학회 (2022.06.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참여 확정. <https://krcpa.or.kr>.
- 한국상담학회 (2022.05.09.). (사)한국상담학회 심리사법안 반대 성명. <https://counselors.or.kr>.
- 한국상담학회 (2022.06.24.).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제도 정립 논의 협의체” 참여. <https://counselors.or.kr>
- 한국임상심리학회 (n.d). 정보광장-정신건강심리사란?-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 https://kcp.or.kr/user/sub03_8_2.asp 에서 2023.03.19. 검색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n.d). 민간자격 서비스-민간자격검색(등록/공인). <https://www.pqi.or.kr/inf/qual/infQulList.do> 에서 2023.02.20. 검색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1.03.03). APA moves step closer to accrediting master's programs in health service psychology. <https://www.apa.org/news/press/releases/2021/03/master-programs-health-service-psychology> 에서 2023.03.18. 검색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Minority Fellowship Program (2017). Proceedings of the Summit on Master's Training in Psychological Practice. <http://www.apa.org/pi/mfp/masters-summit/default.aspx>
- CACREP (n.d). Home - CACREP. <https://www.cacrep.org> 에서 2023.02.12. 검색
- Campbell, L. F., Worrell, F. C., Dailey, A. T., & Brown, R. T (2018). Master's level practice: Introduction, history, and current statu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9(5-6), 299-305.
- Hughes, T. L., & Diaz-Granados, J. (2018). Master's summit: Quality assurance and accreditat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9(5-6), 306.
- Texas Behavioral Health Executive Council (n.d). Consolidated Rulebook for Professional Counseling. <https://www.bhec.texas.gov/statues-and-rules/index.html> 에서 2023.02.28. 검색

양난미 등 / 심리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한 인식조사: 상담심리사와 일반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Tower, K. D. (1994). Consumer-centered social work practice: restoring client self-determination. *Social Work, 39*(2), 191-196.

원 고 접 수 일 : 2023. 04. 05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8. 30

게 재 결 정 일 : 2023. 10. 18

Surveying Perceptions of Qualifications of the Psychotherapist: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Counseling Psychologists and the Public

NanMee Yang¹⁾ Jae Pil Ha²⁾ Hyunmo Seong³⁾ Sang Min Lee⁴⁾

¹⁾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²⁾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³⁾Korea University Brain & Motivation Research Institute Post-Doc Researcher

⁴⁾Korea University Professor

In 2022, amidst the proposal of four law drafts, heated debates emerged concerning the qualifications of psychotherapists. This study delves into how counseling psychologists and the general public perceive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of psychotherapists in their professional roles. A total of 882 counseling psychologists and 779 regular citizens participated in the survey. First, citizens advocating for ‘bachelor’s degree’ and those endorsing ‘master’s degree’ as the minimum educational attainment were nearly equal in proportion. Conversely, the majority of counseling psychologists advocated for a ‘master’s degree’. Second, both counseling psychologists and the public predominantly emphasized a requirement of ‘1,000 hours (four days per week for 1 year)’ for mandatory supervised training for psychotherapists. Third, counseling psychologists predominantly favored ‘200 hours’ for the necessary practicum training period within their degree curriculum. Finally, this study addresses the implications of these qualification requirements by scrutinizing the disparities in perceptions between counseling psychologists and the public.

Key words : *qualification criteria, minimum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supervised training period, counseling psychologist, the public, survey research*

